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30 선고 2019가단644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30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 116,832,875원 및 그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,
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110,553,423원 및 그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,

각 2019. 3. 6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영수

별지